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▶ 계약기간

센터는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.

- 1)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.
- 2)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,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.
- 3)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.
- 4) 장기요양보험등급이 없는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 (단 모든 비용은 비급여로 당사자께서 모든 비용을 지불한다.)

▶ 계약목적

- 1) 계약의 목적은 계약당사자인 기관과 이용자가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계약 당사자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있다.
- 2) 노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,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▶ 월 이용료

1. 본 센터에서 서비스와 관련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
1) 본인부담금

- 일반 대상자: 15% - 기초수급자 : 0%
- 의료, 감경 대상자 : 6%, 9%

■ 감경 대상자 : 1)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자

2)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차상위 계층 범위에 해당하는 자

2) 공단부담금

- ① 서비스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
- ② 재가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게 됨.

3) 비급여항목

- 식대 : 센터에서는 중식과 필요시 석식을 제공하며 중식은 일 2,500원, 석식은 일 2,000원 으로 한다.
단 입소후 이용하지 않을시는 청구하지 아니한다.
- 간식비 : 아침 송넵이나 커피, 오후 식단에 따른 간식을 제공하며 이용시 일 1천원으로 한다.
단 오후 간식을 이용하지 않으면 청구하지 아니한다.
- 기타 : 병원진료나 약 구매, 미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자부담이며, 발생시 본인이 직접 지급하거나 센터에서 지급 후에 급여비용에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다.

2. 장기요양 등급이 없는 일반 어르신인 입소할 경우

- 1) 이용요금 : 해당년도 장기요양 4등급 기준 전액 부담.
- 2) 비급여항목 : 식대, 간식 등 급여등급 어르신과 동일하게 책정한다.

▶ 신원인수인의 의무

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무와 권리를 말하며,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.

신원인수의 권리·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신원인수방법

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(가정) 또는 사랑방노인복지센터에서 수급자(보호자)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 계약 후,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.

2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 권리 및 의무

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 등의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하고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, 집기 등의 오·파손, 멸실에 관해서는 원상 회복을 하여야 한다.

1)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무

- ①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납부 의무
-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

2) 센터의 의무

- ① “수급자”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.
(단, 병원 입원 시는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)
- ② “수급자”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한다.
(단,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)
- ③ 장기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과 행정관리 업무를 이행한다.
- ④ 센터는 수급자의 상태나 욕구에 따라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할 수 있다.
(자원연계는 사안이 발생하여 연계가 필요할 때 실시하고 자료를 보관함)

▶ 계약의 해제

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·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.

- 1)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.
- 2)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,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- 3) 계약해지 등 기타사항은 서면, 전화,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,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.